

2026. 9. 1.(화) 10:00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 의 안



김 제 시 의 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26-87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새만금특별위원장

1. 주 문

붙임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새만금의 행정질서와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관리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
-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에서 전체 관할구도, 연결성·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공유수면 상태에서 적용되던 해상 경계선이 아닌 매립지의 관할 경계를 결정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이 적법함을 확인한 바 있음.
-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하여 진입 도로를 통해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 등 내부개발지역과 하나의 접근·개발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기존 관할구도와 공간적·기능적 연속성에 부합하는 일관된 판단이 필요함.

- 심의과정에서 민간위원 간 의견 대립, 정부위원의 실질적 판단 여부, 위원 구성과 전문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이른바 ‘김제에 이미 많이 결정됐으니 이번에는 군산’이라는 나눠주기식 논리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종 의결 전 절차적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 또한, 과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당시에도 지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전문가 토론과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친 바 있으므로, 이번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역시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전문검토, 추가 자료검증 등 충분한 절차를 통해 양측 주장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함.
- 이번 관할결정은 향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군산·김제·부안 간 상생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이야말로 지역 간 신뢰와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임.
-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충분한 법률적·전문적 검토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숙의를 거쳐 대법원 판례와 기존 판단기준, 법과 원칙 및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최종 관할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새만금신항 관할은 지역 간 이해관계나 안배가 아닌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해 온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대법원의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2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신항과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관계, 육상 접근 체계 및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기존 김제시 관할결정은 법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결과인 만큼 이를 김제시에 불리한 사정이나 지역 간 ‘몫 나누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됨.
-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전문검토, 추가 자료검토 등 실질적인 숙의절차를 거쳐야 함.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분한 법률적·전문적 검토와 공정한 숙의를 거쳐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에 부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

4. 참고 사항

- 결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문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임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항만 하나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그만큼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일관된 행정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 관할구도, 연결성과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해 왔다. 또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이 적법함을 이미 명확히 확인하였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사정만으로 2호 방조제를 타 지자체 관할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항만의 국가적 관리기능과 새롭게 조성된 매립지의 지방행정 관할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은 새만금신항 매립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하며, 진입도로를 통해 직접 연결된다. 또한 그 육상 접근축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진다.

방조제와 도로, 신항과 배후지역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관할결정 역시 이러한 공간적·기능적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행정구역은 지도 위에 임의로 긋는 선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연결성과 접근성,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 역시 법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지, 김제시에 대한 특혜나 지역별 몫 나누기의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는 김제였으니 이번에는 군산”이라는 식의 판단은 결코 형평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 관할 면적을 보더라도 김제가 부안·군산보다 많은 지역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¹⁾

그럼에도 기존의 적법한 관할결정을 다음 결정에서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관할결정은 향후 추진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군산·김제·부안 간 상생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 시·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1) 김제 23.6%, 군산 35.5%, 부안 40.9%

그러나 관할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어느 한 지역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지역 간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향후 공동사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할결정이 오히려 새만금 전체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상생은 법과 원칙을 희생한 타협이나 지역 간 나눠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관할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상생의 출발점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자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숙의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경우라면,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추가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과정에서도 지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전문가 토론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각종 자료 검증 등을 거쳐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 역시 필요하다면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부처의 전문적 검토, 추가적인 법률·사실관계 검증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진입도로·방파제·배후부지 개발, 새만금 기본계획 등 여러 국가정책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따라서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정부 당연직 위원 역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소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외부 영향력 행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고려나 부당한 외부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최종 결정이 어떠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와 법률적·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 간 몫 나누기와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자료·의견 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위원이 독립적·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절차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이 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2호 방조제 관할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동일한 판단기준을 새만금신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 영향력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식과 순리가 부합하는 관할 결정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2026. 9. 1.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